

의안번호	2212226
의 퇴 인	김정재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9.
추 계 번호	25B4516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제6항 (위생상의 조치 등) 신설	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 시설,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,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 수질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6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3조제6항 (위생상의 조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료시설,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,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행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¹⁾에 따라 수돗물 수질 등 관리·

1) 「수도법」

제21조(수도시설의 관리)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. 다만,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.

「수도법 시행령」

제32조(급수설비의 관리자)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.

1.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: 수도사업자
2.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: 다음 각 목의 자
 - 가.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: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
 - 나.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: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

책임 주체는 민간시설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자(지방자치단체)이고, 계량기 이후 급수시설은 시설 소유자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·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에게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,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시설,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저수조에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개정안에 따라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한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사회복지시설의 규모,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비용, 수질의 상시 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개정안에서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